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더조은환경기술(주)		
	주 소	우41223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103, 203호 (신암동, 더블류스퀘어)		
	전화번호	031-251-7904	팩스번호	031-662-7902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서영엔지니어링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수내동, 도담빌딩)		
	전화번호	02-6915-7000	팩스번호	02-6915-8800
신청인(3)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		
	주 소	우031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2(신문로2가)		
	전화번호	02-738-1130	팩스번호	02-720-1598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85호
- 명 칭 :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
- 기술분야 : 건축 > 해체 > 기타 해체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를 작업면과 평행한 상태를 만든 후, 작업대에 장착된 습윤장치로 지붕재를 습윤상태로 만들며, 해체한 지붕재를 적재대에 임시 적재 및 보관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추락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제어가 가능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공법이다.

- 신기술의 범위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작업 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여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없음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